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근해어업·[]연안어업·[]구획어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용어선 또는 어구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어구시설의 종류 및 규모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또는 어구시설의 수면위치					
어업의 시기					
포획물·채취물의 종류					
허가기간					
양륙항					
승계사유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상속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매입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의 임차	

「수산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그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수수료 조례에 따름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근해어업·연안어업 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처분일자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자	위반내용	진행상황

-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없음
 - 2)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상자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와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는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를 받는 자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